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4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준혁・박희승・이수진

권칠승 · 김영환 · 안규백

김재원 · 손명수 · 부승찬

정을호 · 김문수 · 박정현

강유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 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 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 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u><삭 제></u>		
<u>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